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9. 1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 소유 미분양주택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가.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기준을 전용면적 “60제곱미터이하”에서 “85제곱미터이하”로 그 감면범위를 상향 개정함(안 제12조제2호)
- 나.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3 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함(안 제24조의2)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지방세법 제9조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
- 예산상황 : 해당없음
- 기타사항 : 경기도 세정 13400-946('98. 6. 1)호
경기도 세정 13400-72('99. 1. 9)호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중 “60제곱미터이하”를 “85제곱미터이하”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)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(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)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3을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시한)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.
- ③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공공단체·주택건설사업자(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를 말한다)·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을 말한다)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·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.</p> <p>(단서 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전용면적 <u>60제곱미터이하인</u> 임대목적의 공동주택(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3. (생략) 	<p>제12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-----</p> <p>-----</p> <p>(단서 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85제곱미터이하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설〉</u>	<p><u>제24조의2(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)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(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)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3을 적용한다.</u></p>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-

의안 번호	741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1999. 2. 8.

제 안 자 : 의회행정위원장

노영호 외 6인

1. 수 정 이 유

- 부칙중 적용 시한에 있어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일부 조항만 적용시킨 점이 불합리하여 수정코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부칙 제2항(적용시한) 중 “제12조 제2호의 개정 규정은”을 “이 조례는”으로 수정함.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제2항(적용시한) 중 “제12조 제2호의 개정 규정은”을 “이 조례는”으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원 안	수정안
부 칙	부 칙
<p>①(생략)</p> <p>②(<u>적용시한</u>) 제1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①(원안과 같음)</p> <p>②(<u>적용시한</u>)이 조례는</p> <p>③(원안과 같음)</p>